

제 4 장 원산지 규정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채취된 광물,
- 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 마.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 바.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 선박 내에서 상기 마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 사.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 아.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생산, 또는
 -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그리고
- 차.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가호 내지 자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 아. 상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라 함은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및 사육, 텃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을 말한다.

재료의 가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는

- (1)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수입과 관련하여 조정된 재료의 조정가격이 된다.
- (2) 상품이 생산된 영역내에서 구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실제 재료비용이 된다. 그리고
- (3) 생산자에게 무료로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제공된 재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가치는 다음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 (가) 일반지출금을 포함하여 재료의 사육·재배, 생산 또는 제조시 발생한 모든 경비, 그리고
 - (나) 이윤.

나.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 (1) 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 더할 수 있다.
 -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그리고
 - (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 (2)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 다음 지출금이 가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그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다.
 - (가) 생산자가 있는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지불되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

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제4.2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이다.

가. 상품이 제4.1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다.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61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하나 이상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 상품이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제2(a)조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됨, 또는

(2) 상품의 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퍼센트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퍼센트 이상이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가능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해 제품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 부속서 4의 적용가능한 규칙이 다른 비율의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부속서 4에 따른 세번변경을 이루고 그 밖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생산된 상품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요건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만 충족되어야 한다.

3. 이 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제조 과정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그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4.13조에 따른 제조과정만을 거쳐서 생산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가지 방식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방식 1: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방식 2: 직접법

$$RVC = \frac{VOM}{AV} \times 100$$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다.

AV는 조정가격이다.

VN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제4.4조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역내가치포함 비율 산출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다른 자체생산 재료가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되었을 때 그 다른 재료 자체가 중간재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누적계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6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4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조정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 하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서 규정된 상품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된다.

제4.7조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목적상,
 - 가.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특정 대체가능한 재료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나, 통일규칙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판정된다. 그리고
 - 나.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되어 동일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 판정은 통일규칙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2. 일단 재고관리기법에 의거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전체 회계년도를 통해 이 기법이 사용된다.

제4.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다음의 조건하에,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 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그리고
- 나.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것.

2.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9조 간접재료

1.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그 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기록된 비용이 된다.

2. 간접재료의 가치는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와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상품 생산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4.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다음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 4에서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 나.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제4.13조 불인정 공정

-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 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 나. 세탁, 세척, 채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 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빼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 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아. 염화, 가당,
- 자. 동물의 도살,
- 차. 분해, 그리고
-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 가. 이 장의 관세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
- 나. 제4.2조제1항 라호를 적용할 경우,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하에서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 및 그 부품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에 따라 당해 호나 소호의 관세분류 체계 및 부 또는 류의 주석에 기초해서 내려진다.
- 다. 이 장 하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도 적용된다.
 -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 규정과 상이한 범위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 (3) 제4.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4.15조 협의 및 변경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5장에 따라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의 발전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이 장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첨부한 변경안, 관련 연구결과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질 필요가 있는 적절한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검토를 위해 타방 당사국에 제출할 수 있다.